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|------|
| 선 | 기관외장 |
| 람 | |

제1457호 2019. 8. 8(목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----- 1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 - 1303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2019. 8. 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「시·군·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」에 따른(인구규모 50만 이상 → 상근인원 10명 이상) 조직 인원 개정
-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팀명, 위원회 명칭 등 정비

2. 주요내용

-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운영요원 수(7명→8명) 조정(안 제3조)
*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예산은 이미 반영
- 현재 팀명에 따라 ‘총무기획’을 ‘기획조정’으로 정비(안 제3조, 제10조)
- 직원의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 ‘운영위원회’에서 ‘인사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18조)
*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인사·복무 표준규정 준수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총무과장)에게 2019. 8. 28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(우)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/☎ 032-560-4787, FAX 032-560-2710]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4. 참고사항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(안)

| 의견제출서 | |
|--|---|
| 1. 자치법규명 | |
| 2. | 성명(단체명/대표자) |
| | 주 소 |
| 3. 의견 | |
| 4. 기타 | |
| <p>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 제출인 주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전화 :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성명 (서명 또는 인)</p> <p>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</p> | |
| 비고 | <p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|

※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제안이유

-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「시·군·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」에 따른(인구규모 50만 이상 → 상근인원 10명 이상) 조직 인원 개정
-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팀명, 위원회 명칭 등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운영요원 수(7명→8명) 조정(안 제3조)
*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예산은 이미 반영
- 나. 현재 팀명에 따라 ‘총무기획’을 ‘기획조정’으로 정비(안 제3조, 제10조)
- 다. 직원의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 ‘운영위원회’에서 ‘인사위원회’로 변경(안 제18조) *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인사·복무 표준규정 준수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예산편성 내용 첨부

서구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총무기획팀”을 “기획조정팀”으로, “2명”을 “3명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총무기획팀장”을 “기획조정팀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운영위원회”를 “인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3조(센터의 기구)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제7조에 따른 센터의 기구는 센터장, 운영위원회, 2개팀을 두며 구성인원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총무기획팀</u> : 팀장 1명, 운영요원 2명</p> <p>4. (생략)</p> | <p>제3조(센터의 기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기획조정팀</u> ----- -- 3명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, 서기를 두며 간사는 <u>총무기획팀장</u>, 서기는 <u>교육홍보팀장</u>이 된다.</p> | <p>제10조(간사) ----- ----- ----- <u>기획조정팀장</u>----- -----.</p> |
| <p>제18조(직원의 임용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센터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하며 팀장, 운영요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<u>운영위원회</u>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용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| <p>제18조(직원의 임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인사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|